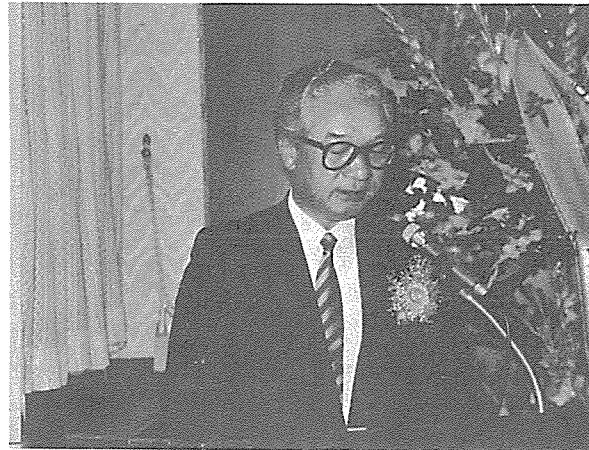


韓國齒政会 発起人大会

지난 치협 제37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후보 李鍾守씨는 「한국치정회 창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관계당국과 정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바 있으며 당일 李鍾守씨가 제20대 치협회장에 당선됨으로서 치정회 창설을 위한 준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날 72명의 발기인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고도 진지하게 대회가 개막되었다.

여기에 발기인총회에서 행한 李鍾守 치협회장의 개회사와 崔光哲준비위원회 간사의 「치정회 발기인대회에 즈음한 나의 소견」의全文을 소개함으로서 한국치정회의 방향과 성격을 가늠하는데 참고에 공(供)코자 한다.



〈李鍾守치협회장이 치정회 창설의 당위성이 담긴 내용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開 會 辭

지금 우리나라 각分野마다 先進을 向한 成長과 發展이 거듭되어 하루가 다르게 變化하고 있으며, 이에 발마춘 民主化라는 또 새로운 改革이 始作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期待와 希望을 안겨주는 좋은時代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不幸하게도 유독 齒科界만 當局의 近視眼的이고도 偏頗的인 施策의 結果로 齒務擔當部署가 抹殺되었는가 하면, 齒科人力의 過剩輩出로 갖가지 副作用이 나타나고 있으며, 不正醫療 齒科돌팔이는 全國的으로 더욱 기승을 떠나고 있고, 不當한 醫療酬價의 強要로 齒科醫院의 零細性은 날로 深化되어 가고 있는것이 事實인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教育과 研究의 目的으로 當然히 獨立的으로 있어야 할 國立 齒科大學의 附屬病院마저 統合이라는 美名으로 醫科大學附屬病院의 一個病科로 轉落 隸屬되는 等, 受難파逆境이 反復되는 暗澹한 現實임을 누구도 否認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現狀에는 여러가지 原因을 生覺해 볼수 있겠으나 우리 齒科界 政治力이 너무 弱하거나, 없었다는것이 主要原因中의 하나라고 判斷하여 齒科界의 懸案問題 解決과 齒協의 事業支援 및 政治力強化를 為해서 감히 齒政會의 創設을 提唱하게 된것입니다.

오늘 이자는 바로 그 歷史의 現場이 될것이며, 여러분은 그 主人公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全國의 모든 齒科醫師가 齒政會에 參與하게 됨으로서 和合과 團結이 더욱 敦篤해지고 齒政會가 큰 모임으로 發展할것을 믿어 疑心치 않으며 齒科界의 懸案問題들이 齒政會의 힘으로 하나, 하나 解決되어 가기를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1988年 7月 20日

大韓齒科醫師協會
會長 李鍾守

(가칭) 한국치정회 발기인대회에 즈음한 소견

치정회 준비위원회 간사 崔 光 哲



(치정회 준비위 崔光哲간사가 발기인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치정회 창설의 필요성은 치협 회원들간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에대한 기대도 크다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기구편성, 규약, 회의운영등에 있어서 약간의 미묘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을 제정하여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안되듯이 모든 문제는 상호 이해와 타협으로 훌륭한 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고루한 지식과 미약한 연구이지만 개인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한국치정회 목적에 관하여

한국치정회는 우리치과의사의 권익옹호와 치협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 국민보건 및 치과의료전반에 관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현재 정당인으로서 또는 앞으로 정당에 가입하여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시·도의원 및 군·구의원, 그리고 행정기관장 등을 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들만이 관여하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있겠으나 그런 분들만이 모인 단체가 아니고 전 회원이 참여하여 전 회원을 위하는 단체로서 탄생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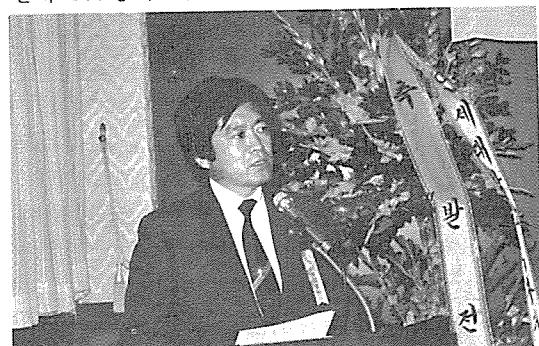
나) 치협을 일방적으로 비판 또는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단체 또는 치협에 대하여 반대아닌 반대만을 일삼는 야적인 위치에서 불협조와 불화음을 일으키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있겠으나 한국치정회는 치협과 불가분의 상호유대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다) 치협은 보사부의 지도감시하에 법에 따른 사단법인단체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치정회는 법의 보호도 없을 것이고 집시법, 반공법 등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위를 할 때는 법에 저촉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나 치과의사의 권익옹호에는 하등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라) 따라서 제도권밖의 단체로서 관계요로에로 비활동을 하는데 저항과 저촉이 적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적 대외적인 힘으로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치협과 한국치정회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로 상호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치정회 회원에 관하여

가) 치협 회원 중 거의 전체가 아니고 국소수의 뜻을 같이 하는 회원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컨대 100명이 가입했을 경우 그분들의 호주머



(黃圭宣준비위원이 치정회 발기에 따른 경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니를 털어서 8,000여 치과의사의 권익을 옹호 할 수 있을까요? 물론 100명이 성의가 있어서 연간 기백, 기천만원을 낸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로 보고 있다.

나) 의정회는 의협 전 회원이 의정회 회원이며, 연간 30,000원을 의정회비로 납부하고 있다. 일본치정회도 일본 전 치과의사 (개인)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약정회도 약사회원 전회원과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인사(주로 외부)로 되어있다. 그리고 약정회 창설시 가입비 2 원을 약사회원들이 수납한 바 있다.

다) 따라서 한국치정회도 치협회원 전원으로 하되 개인의 뜻과 자격에 따라 가입도록 해야 하며, 년회비 20,000원 정도로 하고 전원가입하도록 치협의 홍보와 시도지부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3. 대의기구에 관하여

가) 의정회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전체 의협대의원으로 구성하는 대의원총회가 년 1회 개최되며, 의협대의원총회 장소에서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결산사업을 다루나 회장단 선출은 하지 않고, 시.도지부장 협의회에서 회장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나) 약정회는 약사회장과 약정회장이 협의해서 운영위원 70명 정도를 선출하고 시.도지부장과 서울시 구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결산사업계획을 다루지만 회장단 선출은 없다.

다) 일본치정회는 전국회원 750명중 1명의 비율로 대의원이 되는 평의원회가 년 2회 개최된다. 예결산 사업을 다루고 회장단, 감사단 선출을 한다.

라) 치정회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되 행정간소화와 경비절약으로 치협의 대의원총회를 마친 장소에서 계속 개최하든지 따로 소집하는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장단, 감사단 선출은 총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회무집행기구에 관하여

가) 약정회는 실행위원회 20명정도, 의정회는 상임위원회 15명과 중앙집행위원회(부회장단,



(창립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金東順고문이 全 齒科人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의장단, 시.도지부장)를 구성하여 지방과의 유대협조가 잘 되어 있다. 일본은 이사장단과 상임위원 5명, 이사 10명으로 되어 있다.

나) 치정회의 상임위원은 15명으로 구성하고 (회장단, 사무총장, 위원) 그리고 중앙위원회는 치협(부회장단, 의장단, 감사단, 이사진) 시.도지부장, 서울시 구회장도 당연직으로 하고, 충진회원중에서 십여명 정도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따라서 지방회원과 치협집행부와 충진원로회원들간의 협조와 유대를 갖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중앙위원회에서는 회장단, 감사단의 선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5. 회장단 선출에 관하여

가) 의정회는 의협회장이 제청하고 시.도지부장 협의회에서 의결선출하고, 약정회는 약사회장이 제청하고 약정회 실행위원회 (치정회의 상임위원회와 같음) 의결로 선출한다. 일본치정회는 일본치과의사회장이 제청하고 평의원회에서 동의 선출한다.

나) 한국치정회는 치협회장이 제청하고 중앙위원회(시.도지부장 회의성격) 의결로 선출하여 총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따라서 총회의 권위도 세우고 선출된 회장단도 신뢰감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